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267
- 제 출 자 : 김태수의원 외 10명
- 제 출 일 : 2017년 11월 13일
- 회 부 일 : 2017년 11월 14일

2. 제안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며,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후단).
- 다.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신설).
- 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적정

(3) 입법예고 : (2017. 11월 17일~11월 24일):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¹⁾ 및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²⁾)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안 제2조 제1호 및 안 제8조 1항 및 제2항)하고, 위원회의 수당지급 근거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명확히 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6항).

가. 정의 규정(안 제2조제1호)

- 안 제2조제1호는 공공데이터의 정의규정 중 정보의 개념을 상위법령에 일치시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고 있는 바,

-
-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의 규정을 통해 법령과 일치하여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적 집행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	-----
<신 설>				-----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신 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 ³⁾ 에 따른 행정정보
<신 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 ⁴⁾ 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신 설>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⁵⁾ 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신 설>				라.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3)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이하 생략)

- 다만, 정보의 유형이 각각의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에 포함시키는 것을 중앙정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함께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안 제8조)

- 안 제8조제1호는 시장이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제공 시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민간 공공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민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8조(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시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 다만, 공공에서 시민들의 정보접근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개발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참고자료①).

- 또한, 유사·중복 투자에 대한 판단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실태조사에 따라 개선·시정 권고 등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기획관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라. 위원회 운영(안 제11조 제6항)

- 안 제11조제6항은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⑤ (생략)</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p>

- 다만, 위원회의 심의 기능강화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부적이고, 세부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참고자료]

서울시 공공앱 현황

번호	앱 명칭	OS	출시년도	부서(기관)	비고
1	서울 여행의 모든 것(i Tour Seoul)	I, A	2009	관광사업과	본청
2	스마트 서울맵	I, A	2011	공간정보담당관	본청
3	120다산콜센터	I, A	2011	시민봉사담당관	본청
4	서울시 세금납부	I, A	2011	세무과	본청
5	서울 빠른길	I, A	2012	교통정보센터	본청
6	120 영상상담	I, A	2012	시민봉사담당관	본청
7	서울시승용차요일제	I, A	2012	기후변화대응과	본청
8	서울대중교통	I, A	2012	교통정보센터	본청
9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I, A	2012	공간정보담당관	본청
10	놀토서울	A	2013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본청
11	서울시평생학습포털	I, A	2013	평생교육과	본청
12	라이브 서울	I, A	2013	뉴미디어담당관	본청
13	My Seoul	I, A	201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본청
14	서울교통포털	I, A	2013	교통정보센터	본청
15	서울주차정보	I, A	2013	주차계획과	본청
16	모바일서울	I, A	2013	정보기획담당관	본청
17	서울시 엠보팅	I, A	2014	정보기획담당관	본청
18	내 손안에 서울	I, A	2014	뉴미디어담당관	본청
19	서울일자리 모바일앱	I, A	2015	일자리정책과	본청
20	서울시 실내지도서비스	I, A	2015	공간정보담당관	본청
21	서울자전거 따릉이	A	2015	보행자전거과	본청
22	엔젤아이즈	I, A	2016	장애인복지정책과	본청
23	엔젤아이즈 도우미	I, A	2016	장애인복지정책과	본청
24	서울시 안심이	I, A	2017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본청
25	tbs 교통정보	I, A	2010	교통방송	사업소
26	u-전시안내(한성백제박물관)	I, A	2012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사업소
27	한강공원	I, A	2012	한강사업본부	사업소
28	모바일 아리수	I, A	2012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29	서울도서관 공식앱	I, A	2012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사업소
30	일반인을 위한 성인심폐소생술	A	2013	소방학교	사업소
31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도슨팅	I, A	2013	서울시립미술관	사업소
32	서울한양도성	I, A	2014	서울역사박물관	사업소
33	서울역사박물관	A	2015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사업소
34	서울대공원	I, A	2016	서울대공원	사업소
35	서울시의회 U신문고	I, A	2011	서울시의회 공보실	시의회
36	서울시의회	I, A	2012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	시의회
37	세종문화회관	I, A	2011	세종문화회관	투자출연
38	지하철안전지킴이	A	2015	서울메트로	투자출연
39	장애인콜택시	I, A	2015	시설관리공단	투자출연
40	서울패션위크	I, A	2017	서울디자인재단	투자출연